

의안번호	2205244
의 회 인	엄태영의원
회 답 일	2024.11.11.
추계번호	24B4826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9조제5항제3호 신설 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)	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발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·지방 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함(제5항) 3. 침수 등 재난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 술을 적용할 것(신설)	재량규정
2	안 제53조 (지하층)	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<u>침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</u>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□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어려운 경우에 해당

III. 미첨부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·지방자치
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침수 등 재난
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고, 지하층에 침수 시 감
전사고 예방기술을 적용할 경우 건설비용 증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
발생할 수 있음

- 그러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침수위험지구에 건설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하는 “침수 등 재난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”이 확정되지 않았고, 침수위험지구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게 되는 건축물별 건축 계획 및 지하층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물량 및 단가, 연도별 건축계획 등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부재로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다만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발개선지구 중 정비대상 침수위험지구는 656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음¹⁾

[표 1] 시도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

(단위 : 개소)

시도	합계	정비 완료	정비 대상							
			소계	침수 위험	붕괴 위험	유실 위험	취약 방재	고립 위험	해일 위험	상습 가뭄
계	2,756	1,897	859	656	38	49	30	26	40	20
서울	16	14	2	2	—	—	—	—	—	—
부산	68	47	21	18	—	—	—	—	3	—
대구	49	38	11	11	—	—	—	—	—	—
인천	16	16	—	—	—	—	—	—	—	—
광주	42	30	12	7	—	—	5	—	—	—
대전	4	—	4	4	—	—	—	—	—	—
울산	32	23	9	9	—	—	—	—	—	—
세종	17	11	6	6	—	—	—	—	—	—
경기	106	72	34	31	2	—	1	—	—	—
강원	345	264	81	40	5	11	8	13	3	1
충북	239	168	71	53	1	5	1	4	—	7
충남	194	112	82	73	1	1	—	2	4	1
전북	351	266	85	72	8	—	1	3	—	1
전남	380	236	144	107	12	11	—	—	12	2
경북	432	279	153	108	6	18	12	2	3	4
경남	362	236	126	101	2	2	2	2	13	4
제주	103	85	18	14	1	1	—	—	2	—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(2024)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제12조(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,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를 거쳐(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